

주안역 센트레빌 근린생활시설 보류지 및 일반분양 입주(점)자모집공고

1. 건설위치 및 공급내역

※ 본 입주(점)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복리시설공급)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 9558호(2021.10.07.)로 입주(점)자 모집 신고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5동 19-2번지 주안역 센트레빌 근린생활시설 (단지내 상가)

■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지상 3층, 총 15호실) 중 보류지 203호, 일반분양 201호, 204호 총 3개 호실 (분양면적 : 261.5443㎡)

■ 주차대수 : 총 8대 (장애인전용주차 1대 포함,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

■ 호실별 공급내역

(단위:㎡, 원, VAT포함)

구분	호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금액(원)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내정가)
2층	201	127.6925	26.7579	154.4504	59.7140	262,194,000	134,460,000	13,446,000	680,000,000
	203	42.7604	8.9604	51.7208	19.9964	249,663,000	128,034,000	12,803,000	225,000,000
	204	45.7800	9.5932	55.3732	21.4085	249,663,000	128,034,000	12,803,000	240,000,000

※ 근린생활시설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로 입찰 및 계약 시 호실별 면적 및 위치 등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준공인가(2021.07.27.)기준으로 향후 소유권이전을 위한 이전고시 등의 행정절차 진행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관련법규에 따라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및 실제 시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등기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전용면적은 건축법규에 의해 산출되며, 호실내에 위치한 기둥 등은 전용면적에 포함됨.

- 계약면적에는 복도, 화장실 등에 대한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각 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주안역 센트레빌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2021. 07. 27.) 된 주택으로 근린생활시설 건물 및 호실, 단지주변 도로 및 주차공간 등의 현장여건을 입찰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시설별 사용 용도 :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

- 관계 법령에 따라 호실별 지정된 용도(근린생활시설)의 범위 내에서 영업하여야 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 및 고시원 제외)
- 상기 이용시설기준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항목별 이용 가능 용도 및 허가면적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2. 공급방법 및 일정

■ 공급방법 : 호실별 공개경쟁입찰(내정가 공개)

■ 공급 조건

- 1) 1인당 입찰 호실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호실에는 1회만 신청 가능함 (중복신청 불가)
- 2) 낙찰자 선정은 호실별 공고된 내정가 이상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단, 최고 응찰금액이 2인 이상 같을 경우에는 최고가 응찰자들에 한하여 즉석에서 다시 입찰을 진행하여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 3) 사업주체는 상기 입찰방식 외 추가적인 추천방식이 필요할 경우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음.
- 4) 호실별로 사업주체 내정가(가액(VAT 포함) 이상)의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응찰자가 1인일 경우라도 내정가(가액)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입찰가의 한글과 아라비아숫자에 금액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표기 금액을 우선함)
- 5) 입찰금액은 호실당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십만원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십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으로 응찰한 것으로 간주함.
- 6) 필요시 입찰과정에서 입찰보증금을 징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10% 완납시 전액 환불처리 되며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하지 않음.
- 7) 입찰금액이 내정가(가액) 미만일 경우 유찰로 하며, 미신청 및 유찰된 호실은 사업주체가 임의로 처리함.
- 8) 낙찰자 발표시 호실별 최고가 입찰자만 공개하며, 낙찰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해당 호실의 낙찰은 무효처리됨. (입찰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됨)
- 9) 입찰 희망금액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고가 입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책임이오니, 입찰 희망금액 결정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10) 계약은 낙찰자의 명의로 계약하여야 하며, 낙찰자외의 명의로 계약할 수 없음. (필요서류 구비시 공동명의 계약 가능)
- 11) 제출된 입찰서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교환 및 변경할 수 없음.
- 12) 낙찰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은 무효되고 계약은 해제되며, 낙찰금액 총액의 10%는 사업주체에 귀속됨

■ 입찰자격 : 공급신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및 법인

■ 입찰 보증금 납부 계좌 (필요시 입찰일에 징구예정)

- ※ 조합에서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으며,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입금방법 : 201호 홍길동의 경우, “201홍길동” 으로 기재
-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용자는 없으며, 낙찰자는 자력으로 공급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10% 완납시 전액 환불처리 되며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하지 않음.
- ※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미계약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조합으로 귀속됨.

■ 공급일정 및 구비서류

구분	일시	구비서류(공급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장소
입찰등록	2021.10.12.(화) (14:00~17:00)	- 입찰참가 신청서(사업주체 제공 소정양식, 등록시 교부) -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 (필요시) - 입찰자 도장, 신분증 - 입찰자 환불 통장사본(유찰자 환불용, 입찰자 명의 통장만 가능) ※ 대리인신청시(추가서류)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도장(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주안역 센트레빌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회의실 (주소 :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9-2) 문의 : 02-779-6114
개찰	2021.10.13.(수) (14:00)	- 입찰서(사업주체 제공 양식으로 입찰등록시 교부) - 입찰자 도장 ※ 개찰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	2021.10.13.(수) ~ 2021.10.14.(목) (13:00~17:00)	- 입찰참가신청필증 및 낙찰확인증, 입찰보증금 영수증 - 계약금(무통장입금증-입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음)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부 - 주민등록표등본1부 - 신분증 ※ 법인 및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리인신청시(추가서류)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도장(위임인), 인감증명서1부(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상기 제반 서류는 신청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함.

※ 대리인 입찰 신청 및 계약시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위임인의 본인 발급용으로 제출하여야함. (본인 외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은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함.)

■ 입점에정일 : 잔금납부일 (정확한 일자는 계약시 통보함)

※ 실입점일이 입점에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점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점일 지연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며, 입점 연기로 인한 지체상금은 없는 것으로 함.

3. 분양대금 납부시기 및 방법

구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점지정일(계약일 이후 60일내)
납부금액	낙찰가의 10%	낙찰가의 90%
납부방법	분양대금 납부계좌[수협농협은행 1010-1225-2115 / 예금주 : 동부건설(주), 주안7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분양대금 입금시 반드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함

※ 분양대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지정된 잔금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음. ex) 1호 홍길동의 경우, “1호홍길동” 또는 “1홍길동” 으로 기재

※ 착오납입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 공통유의사항

- 입찰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분양공고, 호실용도, 현장여건 등 기타 입찰분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계약 전 모집공고 및 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사업주체에서 직접 알선해드리는 용자는 없으며, 계약자는 자력으로 공급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계약일 마감시각까지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되며, 낙찰자가 미계약한 호실 및 미분양 호실은 사업주체가 임의로 공급함.
- 각 호실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시행자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함.
-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공부 미정리, 문화재발굴, 이전고시, 동별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점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대지권의 이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당 근린생활시설은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분양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호실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됨.
- 본 계약으로 인한 실거래가 신고, 검인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함.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도 거래신고의 대상임을 확인하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과태료 등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전에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제한되므로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에 발생하는 신고, 거래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시행자에 통보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공급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함. (단, 계약자 본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사업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은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시기(사용용도 및 업종변경시 포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0.03.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본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시길 바라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여야 함.
- 잔금원납 시 또는 입점지정기간 말일 익일부터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가 부과됨.
- 계약자는 공급대금 및 연체료 완납 이전에(또는 완납과 동시이행 조건으로) 등기 이전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전등기 요청 이전에 공급대금 및 연체료의 납부를 선이행하여야 함.
- 전용면적은 관련법규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매장내에 위치한 기둥 등은 전용면적에 포함되며 호실별 기둥 유·무에 대해 입찰전 현장여건 및 도면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숙지하고 이해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자는 미분양이 발생할 시에 미분양 호실에 대한 가격, 납부조건 및 LAY-OUT과 용도를 시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계약자는 잔금 납부 이전이라도 입점지정마감일 이후 발생하는 공과금 및 전기세 등의 납부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명의변경을 진행하여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 전 까지 구조변경 및 증개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관할 지자체에 사전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라며, 불법 개조 및 증축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관리는 계약자와 입점자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가 자치회나 번영회를 구성하고, 화재보험 계약 및 방화관리자 선임은 분양계약자(상가번영회 등)가 직접 하셔야 함.
- 수분양자(입점자)는 각 호실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옥외공간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공용부분(화장실, 복도 등)은 입점자가 공동으로 자체 관리하여야 함.
- 정비사업의 특성상 이전고시 및 보존등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입점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의 지체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함. 특히 대지권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준공 후 분양상품으로서 공급대상을 직접확인 후 입찰하시길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이후 발생하는 대상물건상에 하자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현장 주변의 제반 환경 등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확인하여야 함.
- 호실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가 승인(준공) 받은 상태로 공급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호실의 칸막이, 진열대, 상하수도, 가스배관, 냉·난방시설, 간판, 인테리어, 별도 전기시설 및 전기승압공사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체의 철거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를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냄새, 진동 등으로 영업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는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인·허가 관청의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및 인가조건을 확인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 호실에 대한 영업허가, 등록 등의 기타 인가와 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입찰자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낙찰자는 입점지정 최초일까지 본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함.
- 입점지정 최초일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는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하여야 함.
- 입점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는 계약자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이후에도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 이전에는 호실내부 및 외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대지지분은 지적확정측량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 단지과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 요청을 할 수 없음.
- 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동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의무가 있으나, 계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 또는 기타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 요청에 관한 의무가 없으므로 준공 건물과 설계도면의 경미한 차이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공급대금 및 연체료 완납 이전에(또는 완납과 동시이행 조건으로) 등기 이전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전등기 요청 이전에 공급대금 및 연체료의 납부를 선이행하여야 함.
- 유찰 및 입찰무효된 미분양 호실은 사업주체가 필요에 따라 임의 분양하며, 호실 구획(호수 및 면적 조정)도 임의로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음.
- 홍보용 인쇄물 및 게시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이미지컷들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옥상 공간에는 조경녹지가 설치될 예정이며, 우측 공용화장실 방향에 근린생활시설 전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고 시공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및 계약 전 사업부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이용으로 인한 소음, 냄새, 빛 등의 공해로 인해 발생하는 아파트 세대구성원이 제시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입찰자 및 입점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체에 없음.
- 분양된 호실에 관한 제반사항은(영업허가, 용도변경, 호실관리, 등록 등의 기타 인가) 입점자(공급받는 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본 근린생활시설 호실의 권리의무승계는 계약금(10%) 납부 완료 이후 가능합니다. 단, 잔금납부 후 또는 연체료 발생시에는 권리의무 승계할 수 없음.
- 공급받는 자는 입점지정 최초일까지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하며 사업주체에서는 조직 구성에 관여하지 않음.
- 공용부분 발생하는 급수, 전기요금 등은 상가변영회를 구성하시어 각 호실별 요금 분개 관리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과 공동사용분의 전기요금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은 면적비 분할에 의한 공동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그 범위 및 분할 비율은 관리주체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2층 201호 옆 오픈형테라스는 201호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유의사항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업종에 대해 영업을 가능하며, 규제사항은 건축법에 따름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입점이 제한됨)
- 근린생활시설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시행자 및 시공자는 일체의 업종보호책임이 없음(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포함)
- 신규분양상가의 건축물대장 작성 및 건물소유권 이전은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담배소매인 지정,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영업 관련 인허가가 지연될 수 있음.
- 학원, 교습소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에서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가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라며 낙찰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낙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정화구역내 설치 불가 업종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입찰자, 입주(점)자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입주(점)자에게 있음.
-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는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인·허가 관청의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및 인가조건을 확인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각 호실은 호실별로 지정된 용도(근린생활시설)의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입주시 및 입주 후의 업종 중복이나 용도에 대하여는 입주자 상호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주안7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42, 강남메디칼타워5층(주안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코레이트타워)
법인등록번호	120171-0004775	110111-0005002

■ 홈페이지 : <https://www.centreville.co.kr/> ■ 문의 : 02-779-6114

■ 본 분양공고에 기재된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체에 문의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함.)